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2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변경)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표합니다.

※변경 내용: 18세 이상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청구기관

2022년 1월 19일

안성시의회의장

1. 제정청구 조례명: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이주현(안성시 대학로 64, 101동 1301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1. 11. 22.

4. 서명요청 기간: 2021. 11. 24.(수) ~ 2022. 3. 18.(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2022.2.15.~2022.3.9.) 제외

5. 연서 주민수: 2,328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2022.1.7. 공표/ 안성시 공고 제2022-84호)

6. 청구 취지 및 이유

○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

7.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규정(안 제12조)

마.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사.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자.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분양·기증 등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차.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지원,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안 제25조, 제26조)

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규정(안 제27조)

타. 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28조, 제29조)

파. 수수료 감면 규정(안 제30조)

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안 별표)

8. 전자서명 절차 안내

○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준비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www.juminegov.go.kr

○ 전자서명 방법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	② 홈 상단메뉴	⇒	③ 지도에서 지역 선택	⇒	④ 조례안 확인
검색창에 “주민참여조례” 검색		“주민참여조례 서명하기” 선택		조회결과목록 우측 “서명하기” 선택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	⑤ 서명 버튼 선택	⇒	⑥ 조례 서명	⇒	⑦ 서명 완료
	“서명 및 취소하기” 선택		※ 확인사항 - 지역주민 확인 - 공동인증서 확인		※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 오류 -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비밀번호 등 오류

○ 전자서명 취소 방법

①~④번 과정동일 ⇒ ⑤번 “취소하기” 선택 ⇒ ⑥ 공인인증 후 취소

9. 문의

○ 그 밖에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의회 의사팀(☏ 031-678-3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